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92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2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가단515760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9.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1) 을 121,354,9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354,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7. 9. 29.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 2017. 12. 20. 체결된 변경계약, 2018. 1. 11.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 양수인 변경계약을 각 121,354,9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354,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의 나. 3)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9, 15, 34, 41, 43, 45, 46, 51, 52, 56,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에 C와 피고 또는 F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F은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거래조건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산정된 대금은 이 사건 제1 내지 6, 8, 9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염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이 존재하는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이 크다고 인식할 만한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F 혹은 R 측에서 파악한 C의 채무 금액은 37억 6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후 피고가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C의 채무 상태에 별다른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가 그 과정에서 기존에 파악하였던 C의 채무 외에 원고의 피보전채권 등 다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⑥ 피고는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2017. 12. 20.자 수정계약,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 2018. 7. 11.자 확인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금 중 C와 피고 사이의 정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직접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C의 채권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부 지급한 점, ⑦ 피고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파악한 C의 채무를 가능한 직접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는 C로부터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승계하여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피고가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약체결의 과정,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에서 C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한 의사록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선이행의무로 규정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제출받기로 한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의 실행에 착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을 제8, 10,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제7.1조가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성취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양수인은 제6조에 따라 본건 거래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7)호에서 “본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등 관련 법규상 요구되는 회사의 내부 승인을 모두 얻었고, 이를 증명하는 공증 이사회 의사록 및 공증

주주총회 의사록을 양수인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C와 피고는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규정을 포함하여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의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51, 52, 54,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C의 주주명부에는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O과 P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P 명의의株式이 주식회사 Q에게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O은 C의 대표이사로서, P은 C로부터 F과의 매매계약금 처리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각 F 내지 피고와의 계약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C의 주주 전원인 2인이 참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그 진행을 위한 권한을 O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가 파악한 C의 주주 및 이사 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외에 추가로 의사록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

별지

목 록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공장용지, 5054㎡
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공장용지, 4805㎡
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공장용지, 5569㎡
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공장용지, 1905㎡
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공장용지, 4503㎡
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공장용지, 696㎡
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공장용지, 164㎡

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 ,
, , 동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공업화박판강구조(피이비)

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3,600㎡

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 ,
, , 동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경량철골구조 철판지붕

단층공장

1층 141㎡, 1층 78㎡

1) 원고는 청구취지에 이를 매매계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취지는 2017. 9. 29.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